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5. 18 선고 2021가단66767 판결 [계약금등 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5. 4.

판 결 선 고 2022. 5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40,67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1. 30.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22. 1. 8.까지, 피고 C에 대하여는 2022. 1. 13.까지 각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판 단

갑 제1 내지 4호증[피고 주식회사 B(다음부터 ‘피고 회사’라 한다)은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, ① 갑 제4호증 중에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부동산 관련 계약, 원고의 해지 및 환불요청, 구체적인 환불 내역의 기재가 있는 점, ② 피고 회사는 자기 명의의 갑 제2호증의 작성 사실에 관하여는 단순히 모른다고만 할 뿐,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(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참조) 등을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다]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17. 3. 8.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, 2018. 10. 8. 피고 C와 사이에 별지2 기재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,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합의에서 정한 40,67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7. 4. 15.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,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합의에서 정한 변제기인 각 2018. 11. 30.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22. 1. 8.까지,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22. 1. 13.까지 각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 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차윤제

별지